5 PART

WORLD AGRICULTURE

해외 농업·농정 동향

1. OECD, 2013년 개발원조위원회(DAC) ODA 분석
2. USDA ERS, 농업법(Farm Bill) 주요 사항 분석
3. 미국-호주 FTA, 관세할당제도와 쇠고기 무역
4. 미국, 미셸 오바마 식품표시제 재검토 지지
5. EU, 2014-2020년 농식품체인 재정체계 채택
6. EU, 농산물진흥정책 예산 2억 3천만 유로 지출
7. FAO,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증가 발표

해외 농업·농정 동향 (2014. 5)

미국

* USDA ERS, 농업법(Farm Bill) 주요 사항 분석
* 미국-호주 FTA, 관세할당제도와 쇠고기 무역
* 미국, 미셸 오바마 식품표시제 재검토 지지

EU

* OECD, 2013년 개발원조위원회(DAC) ODA 분석
* EU, 2014-2020년 농식품체인 재정체계 채택
* EU, 농산물진흥정책 예산 2억 3천만 유로 지출
* FAO,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증가 발표



OECD, 2013년 개발원조위원회(DAC) ODA 분석

ODA 2013년 지난해 대비 6% 증가, 사상 최대 달성[1)]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4월 8일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예산 압박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의 2013년 공적개발원조액(ODA)이 사상최대를 기록하여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6.1%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 공여국들은 2013년 총 1,348억 달러(USD)에 달하는 순공적개발원조를 집행하여 지난 2년간 감소했던 ODA규모를 만회함. 이는 다수의 국가가 ODA 지출규모를 증가시켰기 때문임.
-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연간 공여지출계획에 따르면 2014년 ODA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대(對)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원조 비중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OECD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사무총장은 각 정부가 여러 재정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ODA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현상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힘. 하지만 원조가 매우 필요한 지역의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다음 주 멕시코에서 개최될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언급함.

❍ 2013년 DAC 28개 회원국 중 17개국이 자국의 ODA 규모를 증가시킨 반면, 11개국은 ODA규모를 축소함. DAC회원국의 ODA는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의 0.3%를 차지함. 오직 5개의 회원국만이 UN의 전체 GNI 대비 ODA 비율(ODA/GNI ratio) 0.7% 목표를 달성함.

- 영국은 2013년 ODA 규모를 27.8% 증가시켜 처음으로 0.7% 목표를 달성함. 아랍에미리트연합은 이집트에 이례적인 지원을 하여 가장 높은 ODA/GNI 비율, 1.25%를 보임.
- 저개발국 원조규모는 199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첫 최고치를 보인

1) 공적개발원조(ODA)는 총ODA(gross ODA)와 순ODA(net ODA)로 구분됨. 총ODA란 공여국이 수혜국에게 일 년 동안 지불한 모든 ODA지불금을 의미하며, 순ODA란 총ODA에서 수혜국이 융자 등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것을 의미함. UN의 GNI 대비 ODA 권고비율 등 개발정책은 순ODA를 대표적인 지표로 고려함. 따라서 본 원고에서 사용한 ODA 용어 및 수치 모두 순ODA 기준임.

후 2011~2012년 사이 여러 정부의 긴축정책과 원조예산 간소화로 감소함. 2013년에 반등한 ODA규모는 2013년에 가입한 새로운 DAC 회원국(체코, 아이슬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을 제외하더라도 역대 최고치임.

❍ 양자 간 ODA에서 주식취득(equity acquisition)을 포함한 유상원조(non-grant disbursements)의 규모는 2012년에 비해 2013년 실질적으로 약 33% 증가함. 채무면제(debt relief grants)를 제외한 총 무상원조는 실질규모로 7.7% 증가하였고, 채무면제규모는 3.5% 증가함. 채무면제증여와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한 핵심양자프로젝트의 원조액은 실질단위로 약 2.3% 증가하였음.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양자 간 원조액은 262억 달러로 2012년 대비 4% 감소함. 아프리카 전체 ODA 규모는 289억 달러로 5.6%로 떨어짐.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원조로 2012년에 높았던 부채탕감을 제외하면 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원조는 1.2%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대륙 전체적으로는 0.9% 감소함.

- 대 최빈개도국(LDCs) 양자간 ODA는 실질적으로 300억 달러로 12.3% 증가함. 그러나 미얀마에 대한 이례적인 부채탕감이 있었음.

❑ OECD 공여국별 ODA 수행 실적

❍ ODA 규모 측면에서 최대 공여국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로 나타남.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지속적으로 GNI의 0.7% 이상을 ODA로 지원하였으며, 영국은 2013년 처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함. 한편 네덜란드는 1974년 이래 처음으로 0.7% 미만으로 감소했음.

❍ ODA 규모가 17개국에서 증가하였는데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국가는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 등임. ODA 규모가 축소된 국가는 11개국으로 캐나다, 프랑스, 포르투갈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였음.

- G7은 2013년 DAC 전체 ODA(net ODA)의 70%를 차지하였고, DAC EU회원국은 52%를 차지함.
- 미국은 2013년 315억 달러를 ODA로 지불한 가장 큰 공여국으로 2012년 대비 1.3% 증가함. 미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은 0.19%임. 대부분의 ODA 증가분은 인도주의적 원조와 HIV/AIDS 퇴치 지원에 기인함.

❍ DAC 회원국인 19개 EU국(DAC-EU)의 ODA는 707억 달러로 2012년 대비 5.2% 증

가하였는데 이는 통합 GNI의 0.42%에 해당하는 규모임. DAC-EU국의 2013년 ODA 현황은 다음과 같음<표 1 참조>.

- 2013년 오스트리아의 ODA 규모는 0.7% 증가함. 벨기에는 2012년에 비해 2013년 부채탕감 지원 수준을 낮추어 6.1% 감소함. 체코는 아프가니스탄 양자지원규모를 축소시켜 전체 ODA 규모가 4.7% 감소함. 덴마크의 ODA 규모는 양자지원의 확대로 3.8% 증가함. 핀란드는 전반적으로 자국의 ODA 규모를 증가시켜 3.8% 증가함. 프랑스 ODA의 경우 2012년 대비 2013년 낮은 융자지불액과 부채경감으로 9.8% 감소함.
- 독일의 경우 국제기구 지원 및 양자대출 확대로 3% 증가함. 그리스의 경우 긴축정책으로 인해 7.7% 감소함. 아일랜드는 지속된 예산 압박에도 불구하고 ODA 예산 할당을 안정화하여 1.9%의 미미한 감소를 보임. 이탈리아는 2013년 ODA 규모를 지난해 대비 13.4%를 증가시켜 ODA/GNI 목표비율, 0.16%를 달성함. 룩셈부르크 ODA는 2013년 1.2% 증가함. 네덜란드는 전반적인 ODA 예산 축소로 지난해 대비 2013년 6.2% 감소함.
- 폴란드는 EU기관에 대한 기여 확대로 ODA가 8.6% 증가함. 포르투갈은 재정제약으로 인해 ODA 규모가 20.4% 감소함. 슬로바키아는 2.4% 증가한 반면, 슬로베니아는 0.6% 감소함. 스페인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부채탕감프로그램 운영으로 ODA 규모가 3.7% 확대됨. 스웨덴은 양자지원 및 국제기구 지원 확대로 6.3% 증가함. 영국은 전체 원조 금액을 27.8% 증가시켜 ODA/GNI 목표비율, 0.7%를 달성함.

❍ 2013년 EU 28개국의 순 ODA 규모는 712억 달러로 총 GNI의 0.41%에 해당됨. EU 기관이 저개발국 및 다자기구에 지불한 순지출액은 159억 달러로 2012년 대비 13.1% 감소함. EU외 DAC 회원국의 2013년 ODA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을 두는 원조로 방향을 변경하여 지출이 지연돼 2013년 4.5% 감소함. 캐나다는 2012년의 기후변화 및 부채탕감에 대한 이례적인 지불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2013년 ODA 규모가 11.4% 감소함. 아이슬란드는 ODA를 확대하여 27.4% 증가함. 일본은 채무면제와 양자대출을 확대하여 36.6% 증가함. 한국은 전반적으로 ODA규모를 확대하여 4.8% 증가함.
- 뉴질랜드의 ODA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상쇄되어 1.0%의 감소를 보임. 노르웨이는 개발협력예산 증가와 브라질에 대한 지불 확대로 ODA 규모가 16.4% 증

가함. 스위스는 2015년까지 GNI의 0.5%를 지불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ODA 규모를 확대하여 3.4%의 증가를 보임.

❍ DAC 외 국가의 2013년 ODA 현황을 살펴보면, 에스토니아의 경우 EU기관에 대한 기여와 인도주의적 원조 확대로 22.3% 증가하였음. 러시아의 ODA 규모는 양자원조를 확대하여 26.4% 증가하였음. 터키는 최근 지속적으로 ODA 규모를 팽창하여 2013년에도 29.7%의 증가세를 보임.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이집트에 대한 재정 및 기반시설에 대한 이례적인 지원으로 2012년 대비 2013년 375.5%에 달하는 큰 증가세를 보임. 이는 1.25%에 해당하는 ODA/GNI 비율로 여타 국가 중 가장 큰 비율을 보임.

❍ 2013년 개도국의 융자상환금을 제외하지 않은 DAC 회원국의 총ODA(gross ODA)는 1,512억 달러로 이는 2012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9.5% 증가한 것임. 양자 간 총ODA에 한정하여 유상 재정 지원은 27.3% 증가하여 180억 달러에 달했음. 총ODA 금액 기준 주요 공여국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임.

표 1 2013년 DAC 및 기타 공여국의 ODA(net OD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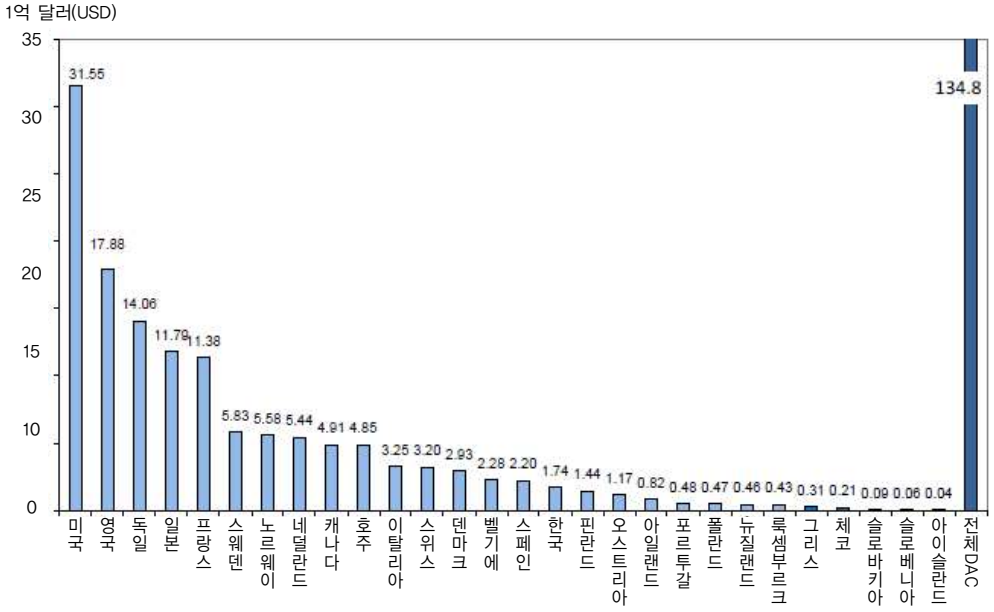
구 분	2013		2012(A)		2013(B)	2012년(A) 대비 2013년(B) 비중 변화주
	ODA	ODA/GNI	ODA	ODA/GNI	ODA	
	백만 달러(USD) 현재가격	%	백만 달러(USD) 현재가격	%	백만 달러(USD) 2012년 가격 및 환율 기준주	
DAC 회원국						
호주	4,851	0.34	5,403	0.36	5,158	−4.5
오스트리아	1,172	0.28	1,106	0.28	1,113	0.7
벨기에	2,281	0.45	2,315	0.47	2,174	−6.1
캐나다	4,911	0.27	5,650	0.32	5,007	−11.4
체코	212	0.11	220	0.12	209	−4.7
덴마크	2,928	0.85	2,693	0.83	2,795	3.8
핀란드	1,435	0.55	1,320	0.53	1,367	3.5
프랑스	11,376	0.41	12,028	0.45	10,854	−9.8
독일	14,059	0.38	12,939	0.37	13,328	3.0
그리스	305	0.13	327	0.13	302	−7.7
아이슬란드	35	0.26	26	0.22	33	27.4
아일랜드	822	0.45	808	0.47	793	−1.9
이탈리아	3,253	0.16	2,737	0.14	3,104	13.4

표 1 2013년 DAC 및 기타 공여국의 ODA(net ODA) 현황(계속)

구 분	2013		2012(A)		2013(B)	2012년(A) 대비 2013년(B) 비중 변화주
	ODA	ODA/GNI	ODA	ODA/GNI	ODA	
	백만 달러(USD) 현재가격	%	백만 달러(USD) 현재가격	%	백만 달러(USD) 2012년 가격 및 환율 기준주	
일본	11,784	0.23	10,605	0.17	14,486	36.6
한국	1,744	0.13	1,597	0.14	1,674	4.8
룩셈부르크	431	1.00	399	1.00	404	1.2
네덜란드	5,435	0.67	5,523	0.71	5,181	−6.2
뉴질랜드	461	0.26	449	0.28	445	−1.0
노르웨이	5,581	1.07	4,753	0.93	5,534	16.4
폴란드	474	0.10	421	0.09	457	8.6
포르투갈	484	0.23	581	0.28	462	−20.4
슬로바키아	85	0.09	80	0.09	82	2.4
슬로베니아	60	0.13	58	0.13	58	−0.6
스페인	2,199	0.16	2,037	0.16	2,112	3.7
스웨덴	5,831	1.02	5,240	0.97	5,568	6.3
스위스	3,198	0.47	3,056	0.47	3,161	3.4
영국	17,881	0.72	13,891	0.56	17,755	27.8
미국	31,545	0.19	30,687	0.19	31,080	1.3
DAC 전체	134,838	0.30	126,949	0.29	134,698	6.1
평균 ODA/GNI		0.40		0.39		
EU 기관	15,925	–	17,479	–	15,187	−13.1
DAC EU 회원국	70,725	0.42	64,724	0.40	68,119	5.2
G7	94,812	0.27	88,538	0.25	95,614	8.0
비G7	40,026	0.40	38,411	0.40	39,083	1.7
비 DAC국가						
에스토니아	31	0.13	23	0.11	28	22.3
헝가리	120	0.10	118	0.10	116	−2.1
이스라엘	186	0.07	181	0.07	170	−6.2
라트비아	24	0.08	21	0.07	24	12.2
러시아	610	0.03	465	0.02	588	26.4
터키	3,276	0.42	2,533	0.32	3,284	29.7
아랍에미리트	5,091	1.25	1,070	0.27	5,086	3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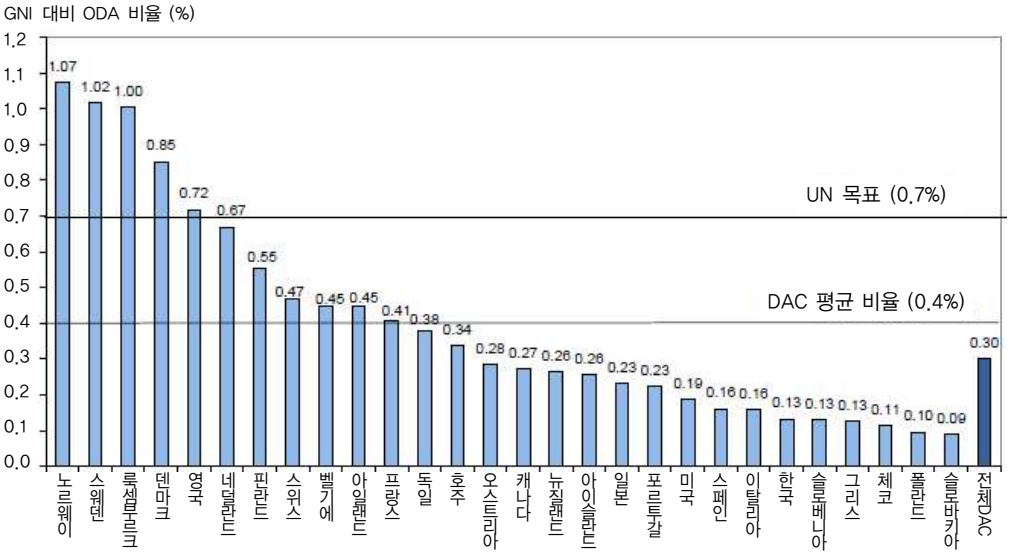
주: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화를 모두 고려함.
자료: OECD(2014.04.08.).

그림 1 DAC 회원국별 2013년 ODA 현황(금액)



자료: OECD(2014.04.08.).

그림 2 2013년 DAC 회원국 지원 수준 현황(GNI 대비 ODA 비율)



자료: OECD(2014.04.08.).

※ 자료: OECD(2014.04.08)

USDA ERS, 2014 농업법(Farm Bill) 주요 사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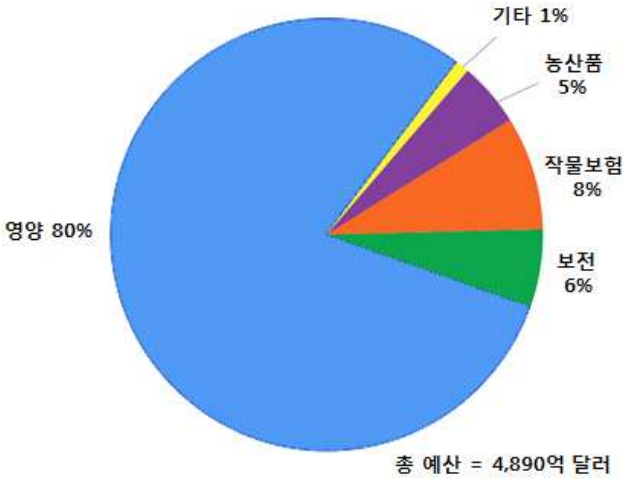
USDA ERS, 2014년 Farm Bill 주요 사항과 영향 분석

❍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농업연구서비스(Economic Research Service)는 2014년 농업법(Farm Bill)의 주요 사항과 향후 영향을 분석함. 2014년 2월 7일 2014년 농업법(Agricultural Act of 2014)이 서명됨에 따라 ERS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조항의 주요 사항과 향후 경제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4 미국 농업법이 농업인뿐만 아니라 푸드 스탬프(food stamp, 식품보조지원제도)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바이오연료 연구, 새로운 농산품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산업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평가함.

❍ 2014년 농업법은 농산품 프로그램에 큰 변화를 주었고, 새로운 작물보험 옵션을 추가하였으며, 보전프로그램을 간소화하고 영양섭취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 더불어 특수작물(specialty crops)과 유기농업인, 바이오에너지, 농촌개발, 신규농업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함.

그림 1 미국 농업법 예산안 2014~2018년 항목별 예산 개요



자료: USDA ERS(2014.04.29).

❍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에 따르면 2018년까지 시행되는 2014년 농업법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영양섭취지원프로그램으로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함. 그 외 작물보험프로그램 8%, 보전프로그램 6%, 농산품 프로그램 5% 등이 있으며, 예산의 1%는 무역, 신용, 농촌개발, 연구 및 확장, 산림, 에너지, 원예와 같은 기타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임<그림 1 참조>.

작물프로그램(Crop Commodity Program)

❍ 작물프로그램(Crop Commodity Program)은 옥수수, 기타 사료용 곡물, 밀, 쌀, 대두, 기타 유지종자, 땅콩, 콩류 등 보장 농산품(covered commodities) 생산자에게 가격 또는 수입 목표에 기초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임. 더불어 새로운 면화보험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한편 육지면(upland cotton)생산자에게 전환지원도 제공함.

❍ 작물프로그램에서는 직접지불금, 경기상쇄지불금(Countercyclical Payments), 평균작물수입보전(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가격손실보장(Price Loss Coverage, PLC)과 농업위험보장(Agriculture Risk Coverage, ARC) 등 두 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함. 보장 품목 생산자는 두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육지면(upland cotton)[2] 생산자는 PLC나 ARC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새로운 작물보험상품인 소득보호플랜(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 STAX)을 신청할 수 있음. STAX 정책은 전환직불금 제도와 함께 시행됨.

❍ 지불금 한도와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 한도를 수정함. 지불금은 농업에 활발히 참여중인 각 개인 당 12만5,000달러로 제한되며, 이에 있어 개별 프로그램 당 별도의 제한은 없음. 배우자는 추가적인 12만5,000달러를 받을 수 있음. 지불금 한도는 PLC와 ARC 프로그램과 마케팅지원융자프로그램 하에 마케팅론(marketing loan gains), 융자부족불지불(loan deficiency payments)에서 지불된 모든 금액을 포함함.

- 농가프로그램혜택 수혜자 자격 제한에 있어 농업소득과 비농업소득을 구분하지 않음. 단일한 AGI 한도 하에서, 비농업소득을 포함하여 AGI가 90만 달러 이상인 농업인은 작물 또는 보전 프로그램 하에서 농가프로그램지불을 받을 수 없음.

2) 육지면(upland cotton, 陸地棉): 목화의 일종. 우리나라에 1904년에 도입되어 남부지방에 보급되었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육지면은 미국의 단섬유형인 킹스임프르브드라는 조숙종임. 잎이 크고 너덧 갈개로 깊이 째졌으며, 희거나 담황색인 꽃은 큼직하고 씨의 면모가 김. 미국면이라고도 함.

❍ 육지면화 생산에 대한 융자 이율 조정 외에 마케팅지원융자프로그램은 기존 그대로 지속함. 또한 설탕프로그램도 기존대로 계속 진행될 것임.

환경 보전(Conservation)

❍ 보전프로그램(Conservation Program)은 농지 및 임지를 보호하고 수질과 수량, 토질, 야생동물 서식지를 개선 및 보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전활동을 채택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프로그램은 천연자원문제를 강조하는 보전활동부터 농지, 임지, 초지의 생산성 향상, 습지 회복, 휴경지 또는 폐경지 전환 등 다양함.

❍ 2014년 농업법에서 보전프로그램은 활동농지에 대한 환경보전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가운데 환경보전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상한을 2017년까지 3,200만 에이커에서 2,400만 에이커로 점차적으로 감소시킬 것임. 많은 보전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통합하거나 현존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다수의 기존 USDA 보전프로그램 수를 23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함.

- 작물보험료보조금을 보전규정준수(Conservation Compliance, 고도로 침식된 토지와 습지의 보전)와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재연계함.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 농촌개발프로그램은 농촌지역사회와 경제개발프로그램 계획, 조직화 및 실행을 담당함. 또한 장거리학습 및 원격의료, 용수 및 폐수처리시설, 지역대학 및 지역당국을 포함한 협력기관, 재생에너지와 지역농산품을 포함한 농업부가가치활동, 일반사업지원 등을 포함한 농촌의 광범위한 투자를 다룸.

❍ 2014년 농업법은 대부분의 농촌개발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나 재정지원승인수준이 일반적으로 낮아짐. 약간의 변화와 함께 농촌 전화와 전화융자프로그램을 확대함. 농촌사업개발, 에너지, 광대역 인터넷에 있어 다수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대체함.

에너지(Energy)

❍ 농업법에서 에너지부문은 교육, 연구, 재정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대체에너지기술개발과 재생가능한 바이오매스 생산 투자를 장려함. 또한 연방정부의 조달과 재정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기타 재생생화학물질과 바이오기반 상품의 제조와 생산을 장려함.

❍ 연방기관에서 바이오기반 상품의 공급과 서비스 조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오기반시장프로그램(Biobased Markets Program 또는 BioPreferred)이 확대됨. 바이오기반시장프로그램은 산림제품을 포함하고, 토지소유주의 "USDA Certified Biobased Product"라벨 인증을 지원할 것임.

❍ 바이오매스작물지원프로그램(Biomass Crop Assistance Program, BACP) 하에서 포함하는 해당재료(material)는 국가산림시스템, 토지관리국, 비연방토지, 보전관리계획을 준수하는 기타토지 등에서 직접 수집 및 수확된 물질임. BCAP는 현재 보전보호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또는 농업보전지역권프로그램(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계약 하에서 토지등록이 가능함.

❑ 작물보험(Crop Insurance)

❍ 작물보험은 가격 또는 생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농업인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고 지속적인 보험 상품을 제공함. 연방작물보험프로그램 하에서 사부문 보험회사는 보험을 판매하고 서비스하며, USDA 위험관리국(Risk Management Agency, RMA)은 보험 상품 개발・승인, 보험 및 지출 보조금을 관리하고 보험회사들을 재보험함.

❍ 새로운 추가보장옵션(Supplemental Coverage Option, SCO)은 기존 작물보험에서 제공하는 보장과 결합한 면적기반(area-based) 보장 보험 상품을 작물생산자에게 제공함.

❍ 소득보호플랜(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 STAX)은 기존의 육지면화 생산자에게 제공된 농산품프로그램보장을 대체함.

❍ 작물보험가입에 해당되지 않는 농산품의 기후관련 피해 보장을 제공하는 비보험작물지원프로그램(Noninsured Crop Assistance Program, NAP)이 확대됨. 대재해손실수준 이상을 보상하는 추가보장보험(additional 'buy-up' coverage) 또한 가입 가능함.

❍ 보장수확량을 설정하는 새로운 방법 도입에 따라 생산자는 해당지역(county) 또는 인접지역의 수확량이 10년 동안의 지역 평균보다 50% 이하로 감소할 때 해당연도를 제외할 수 있음.

※ 자료: USDA ERS(2014.04.11)

미국-호주 FTA, 관세할당제도와 쇠고기 무역

미국-호주 FTA 발효 10년

❍ 미국-호주 FTA가 발효된 지 10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당초 미국이 우려한 호주 농산품이 미국에 넘쳐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음. 제도상 미국이 쇠고기와 낙농품 시장을 계속하여 지키는 구조로 WTO에 기초를 둔 관세할당제도와 미국-호주 FTA에 기초를 두는 관세할당제도가 취해지고 있지만, 두 제도를 초과하는 수입량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일정량까지 수입이 용이한 관세할당제도

❍ 관세할당은 일정한 수입량의 범위 내에는 무관세 또는 저세율 관세를 적용하고 그 범위는 초과하는 수입량에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임. 호주로부터의 수입에 동 제도는 일부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WTO에 기초를 두고 이전부터 있는 체계, 미국-호주 FTA에서 구축된 체계로 2단계가 되고 있음.

- 미국-호주 FTA에 기초를 두는 체계는 범위 내에서는 무관세로 하면서 범위는 (1-1) 계속 확대하여 철폐, (1-2) 계속 확대하지만 미철폐, 범위 밖의 관세는 (2-1) 일정하게, (2-2) 서서히 저하되어 제로(0)가 되는 흐름으로 나뉨. 쇠고기는 (1-1)과 (2-2), 낙농품은 (1-2)과 (2-1)의 조합이 되고 있음.

❍ WTO범위 내에서는 저세율의 종량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미국-호주 FTA를 이용하면 무관세임.

- 결론적으로 현시점에서는 이 점이 미국-호주 FTA가 가져온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음.

쇠고기수입, 미국-호주 FTA 효과는 종량세 철폐로 안정

❍ 쇠고기는 먼저 WTO에 기초를 두는 관세할당제도가 있으며 호주에 주어진 양은 연간 37만 8,214톤임. 이것에 뒤를 이어 뉴질랜드는 21만 3,402톤임. 또한 캐나다, 멕시코는 제한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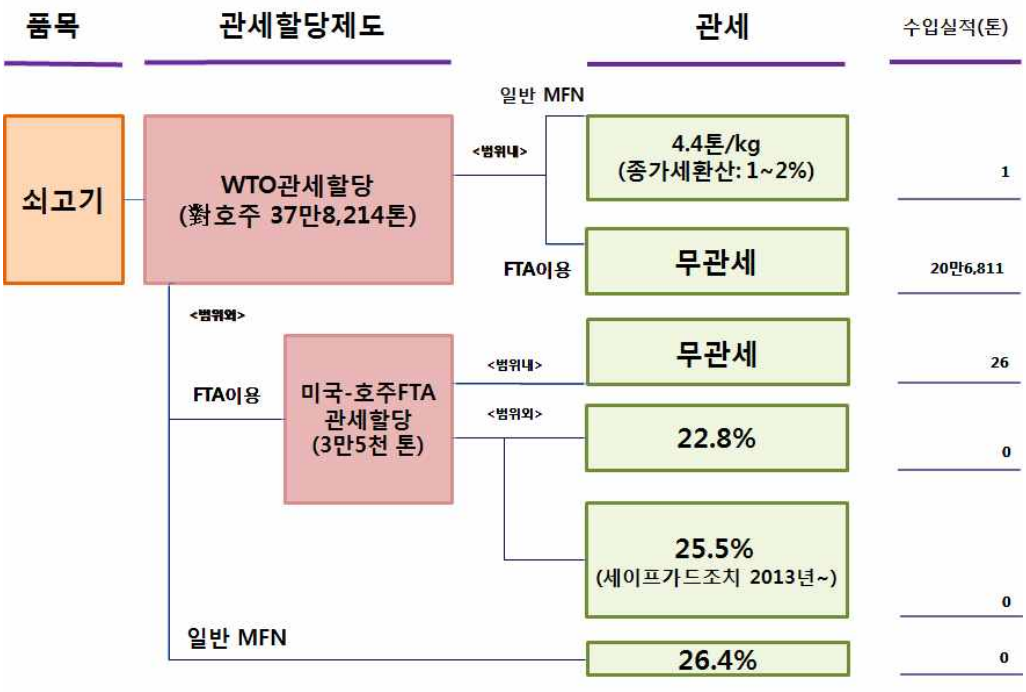
- 범위 내 세율은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3] 기준 1kg당 4.4

센트, 종가세로 환산하면 1~2%가 되지만, 미국-호주 FTA를 이용하면 무관세임.

❍ 이상의 WTO 체계와 함께 미국-호주 FTA는 관세할당제도를 두고 있어, 범위는 해마다 계속하여 확대되어 발효 후 18년이 되는 2023년에 철폐됨. 이것으로 쇠고기는 일반적으로 FTA 자유화인 최장기간으로 하는 10년을 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유화된다는 이론임.

- 2013년과 2014년의 양은 3만 5천 톤 범위 내에서는 무관세이지만, 범위 외에 3만 5천 톤 초과 3만 8,500톤 이하는 세율 22.8%, 그것을 넘으면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이 되어 25.5%로 인상됨.
- 동 세율은 범위 확대와 함께 해마다 계속하여 저하됨. WTO범위 외의 MFN세율 26.4%보다는 저세율임. 세이프가드 조치는 발효 9년 후인 2013년부터 도입되었음.

그림 1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2013년)



자료: ITC(2013), USTR(2013).

3) 관세·항해 등 양국 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 즉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임.

❍ 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잡한 구조이지만, 실제의 수입 구조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음. 미국-호주 FTA가 정한 관세품목에 따른 쇠고기의 수입량(2013년)은 20만 6,838톤으로 대부분은 WTO의 관세할당 범위 내에서 미국-호주 FTA를 채용하여 수입된 것임.

- 수입량이 WTO 범위를 초과하면 FTA 체계를 활용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거기까지 달성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FTA의 효과는 WTO범위 내 종량세를 철폐했다는 점임.

❍ 이상은 2013년의 수치이지만, 과거에도 수입량이 WTO 범위를 초과한 적은 없음. 발효 초년 2005년 수입량은 29만 9,617톤이었지만, 해마다 감소 경향에 있으며 쇠고기수입은 대(對)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음.

❑ 낙농의 FTA 범위 외 MFN세율 적용

❍ 낙농품은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WTO에 기초를 두는 관세할당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FTA에 기초를 두는 관세할당제도가 추가로 취해지고 있음.

- 여기까지는 쇠고기와 같지만, 낙농품의 FTA 범위는 꾸준히 일정 비율로 계속하여 확대되어 철폐되지 않음.
- 범위를 초과하는 수입에는 MFN세율이 계속 적용되어 세율이 떨어지지 않음.
- 동 MFN세율은 종량세 품목에서 많지만, 호주에서의 수입 실적에 근거하여 종가세로 환산하면 수십 %의 세율이 됨.
- 무관세가 아닌 수입이 남는다는 점에서 비자유화 품목이라고 위치를 부여할 수 있음.

❍ WTO 체계에서 버터는 상대국을 특정하지 않는 관세할당제를 취하고 있음. 제한 범위는 6,997톤으로, 아일랜드, 프랑스, 뉴질랜드 등 3개국이 80%를 차지하고 있음.

- 호주는 미국-호주 FTA의 관세할당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음. 2013년의 FTA 제한 범위는 1,900톤으로 발효이후 매년 3%씩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철폐되지는 않음.

❍ FTA가 발효된 2005년에는 체다치즈(cheddar cheese)의 수입량이 많았음. WTO에 근거하는 대(對) 호주의 관세할당 범위는 2,450톤, 미국-호주 FTA에 기초한 2005년의 관세할당 범위는 750톤으로 설정됨. 체다치즈도 버터와 같이 관세할당 범위는 매

년 5%씩 확대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950톤이었음.

- 발효 초년인 2005년에는 WTO관세할당을 거의 다 이용하여 FTA의 관세할당 범위 외에서 MFN세율을 지불하여 수입되는 것이 169톤 있었음.
- 그러나 그 후 수입은 계속 감소하여 2013년에는 2005년의 약 10분의 1 정도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WTO 범위 내에서 매우 안정된 수입량에 머물렀음.

❍ 스위스 치즈는 WTO보다도 미국-호주 FTA에서 정한 관세할당 범위가 큼. 그러나 두 범위를 다 사용하는 정도로 수입되지는 않았음. 발효 초년 WTO 범위 내 수입은 458톤에 달했지만, 그 후에는 범위를 크게 밑도는 수입에 머무르고 있음.

- 따라서 미국-호주 FTA를 이용하지 않아도 무관세로 대미수출이 가능한 수입량임.

❑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낙농품 수입 감소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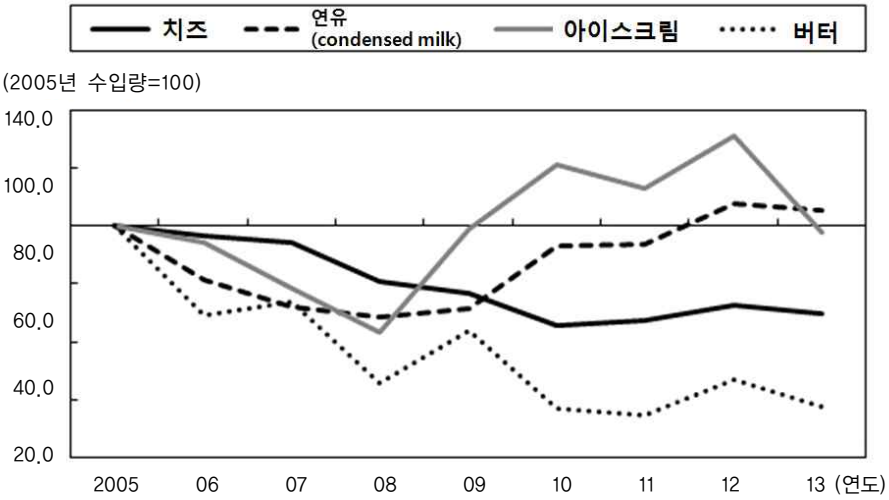
❍ 미국의 낙농품 수입은 대(對)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미국 농무부(USDA)는 2010년 7월의 보고서에서는 2000년대 후반에 걸쳐 낙농품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의 수입 감소가 현저한 치즈 가격은 세계 가격에 비해 높아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이 고려되었으나 최근에는 축소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치즈 수출국은 미국이 아닌 신흥국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특히 최근 중국 내 낙농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으로의 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고 보고 있음.

❍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2004년 5월 미국-호주 FTA의 합의 내용에 근거하여 협정이 야기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수입 증가량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호주에서의 쇠고기 수입은 발효 후 8년간 거의 영향이 없다고 전망되었으며, 미국-호주 FTA에 의한 관세할당범위는 미국의 국내소비나 생산량과 비교하여 적은 것을 근거로 보고 있음.
- 또한 8년간 범위 외 세율은 MFN세율인 26.4%로 두고 있어 호주 제품을 우대하는 구조는 아님.

그림 2 미국의 주요 낙농품 수입



자료: USDA(2013).

❍ 2013년부터는 MFN세율 26.4%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과정에 들어감. ITC 보고서에서는 동 범위 외의 세율이 어느 정도까지 인하되면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하는지에 대해 불투명한 요소가 있다고 하여 명확한 영향은 언급하지 않고 있음.
- 단, 범위 철폐 직전인 2022년에는 7만 톤이 되지만, 그래도 미국의 쇠고기 처리 두수(2003년)의 약 0.9%에 상당하는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음.

❍ 호주에서의 낙농품 수입도 비교적 소규모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쇠고기와 같이 국내 생산이나 소비 규모에 비하여 FTA 범위가 작아, 발효 후 25년이 경과하여도 수입 증가는 국내 우유생산(유지환산)의 0.5%에 상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함.

❍ 결과적으로 현재 수입이 늘어나기는커녕 수입은 줄어들고 있음. FTA 범위가 포화 상태가 될 만큼 수입 증가가 일어난다면, ITC가 예측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자료: JETRO(2014.05.07, 05.08)

미국, 미셸 오바마 식품표시제 재검토 지지

FDA, 식품표기 규제 대폭 재검토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월 27일 미국의 식품표시규제를 대폭 재검토하기로 공표한 바 있음.

- 퍼블릭코멘트는 90일간 접수됨. 영부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언론매체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음. 시행 후에는 모든 수입식품에도 적용되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영향도 클 것이라고 언급함.

미셸 오바마, 기자회견에서 식품표시규제 재검토 후원

❍ 미셸 오바마 대통령부인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식품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식품 구입 시 좋은 상품인지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퍼블릭코멘트 모집 단계이지만 소비자가 어떤 상품인지 알 수 있게 칼로리 표시를 크게 기재하거나, 상품에 첨가한 설탕의 양을 표시하는 등 금번 규제안은 큰 성과라고 언급하며 FDA의 규제안에 지지함.

❍ 식품표시규제 재검토 주안점은 이하와 같음.

- 칼로리 표시나 1인분 분량을 다른 문자보다 크고 굵은 글씨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용이하게 함.
- 1인분 분량을 재검토함. 20년 전과 비교하여 1인분 분량이 변화되고 있음. 예를 들면, 페트병에 든 소다류 등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섭취하는데 1인분 분량은 12온스[4] 용기의 경우는 12온스, 20온스 용기의 경우는 20온스, 용기의 사이즈에 따라 차이가 있음. 또한 아이스크림도 1인분 분량이 예전에는 1상자의 4분의 1이었지만, 최근에는 1상자의 2분의 1을 소비하게 됨.
- 해당상품을 1회 소비로 끝나지 않고 복수로 소비하게 되는 경우를 위하여 1회당 섭취 시 영양성분표시와 함께 그 상품 1팩 전체의 영양성분표시도 기재함.

4) 1온스는 약 28.35g.

- 뼈 관련 질병에 효과적인 비타민 D, 혈압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인 칼륨을 새롭게 영양성분 표시란에 표기함. 현재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칼슘과 철분은 계속하여 표기를 계속하지만, 비타민 A와 비타민 C 표기는 각 회사의 재량에 맡김.
- 식품성분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 추가로 설탕을 첨가한 경우에는 추가한 설탕의 양도 표기함.
- 지방 표기는 계속하여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의 내역을 명기하고, 지금까지 기재하고 있었던 지방의 칼로리는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여겨져 향후 기재하지 않아도 됨.
- 나트륨, 식이섬유, 비타민D 등의 1일 섭취량을 재검토함.
- 1일 영양섭취기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Percent Daily Value)이 처음에 표시되도록 왼쪽으로 옮김. 또한 1일 영양섭취기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각주를 변경함.

FDA의 웹 사이트에서 상세 확인 가능

❍ 금번 미셸 오바마 대통령부인이 기자회견에 출석한 만큼의 힘을 넣는 방법에서 식품표시 재검토에 대한 오바마 정권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음. 실제로 표시가 대폭 재평가된다면 각 기업도 그것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할 것임.

❍ 각 기업에 대한 영향도 상당하기 때문에 아직 퍼블릭코멘트 모집 단계이지만, FDA의 웹사이트에서 상세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규제 대응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자료: JETRO(2014.04.25)

EU, 2014-2020년 농식품체인 재정체계 채택

EU, 2014-2020년 농식품체인(agri-food chain) 공동재정체계 채택

❍ EU회원국은 지난 5월 8일 EU의 2014-2020년 농식품체인(agri-food chain)의 공동재정체계(common financial framework)를 채택함. EU는 19억 유로의 예산으로 향후 7년간 EU의 식품과 사료 부문의 우선사항들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것임.

❍ 새로운 규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제1독회(first reading)[5]에서 합의된 것으로 지난달 유럽의회의원(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MEPs)이 승인하였음. 본예산은 각국정부들이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기에 현재부터 활용 가능함.

❍ 2014-2020년 지출규정은 2013년 5월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소위 '동물 및 식물 보건패키지'라 불리는 농식품부문의 폭넓은 법적 검토 장(part)을 포함함. 다른 4개 장은 동물보건, 식물보건, 식물재생산물질(종자) 및 공식규제 등임. EU 의회와 이사회는 반드시 공동으로 개정안에 동의해야하며, 집행위원회는 2016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새로운 재정체계의 목표는 EU의 환경규제를 단순화하고, 농식품 경영자의 행정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임. 집행위는 새로운 재정체계가 EU와 국가당국 및 생산자를 포함한 모든 산업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언급함.

우선 사항 및 재정

❍ 총 19억 유로의 예산에서, 대부분의 예산은 동물보건프로그램(65%), 특히 가축질병근절 프로그램에 사용됨.

- 이는 EU 일부 지역에서 만연한 수많은 가축질병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백신, 동물테스트, 도살 및 도태 보상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함.

❍ 다음으로 공식규제프로그램(19.9%)으로 '말고기 사건'과 같은 전체 농식품체인에 있어 EU법을 보다 강화하고, 회원국의 규제 효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5) 제1독회: 의안이 처음으로 입법청에서 제출되는 때의 독회.

- 본 프로그램은 공식규제에 개입된 국가당국의 직원을 교육하는 '안전식품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Better Training for Safer Food)'과 분석 또는 실험방법의 균일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EU표준실험실을 재정 지원함.

❍ 약 7%의 재정이 긴급조치로 사용되며, 식품보건 및 식품재생산물질 프로그램에 6.9%가 사용됨. 나머지 1%는 소비자·보건·식품책임운영기관(Consumers, Health and Food Executive Agency, CHAFEA)의 특정 프로그램에 사용됨.

- 식물에 있어 우선사항은 비토종 해충의 유입과 전파를 방지하고, 건강한 종자 사용하는 것임. 손실된 식물과 식물제품에 대한 새로운 보상조치도 제안됨.

※ 자료: Agra Europe(2014.05.08)

EU, 농산물진흥정책 예산 2억 3천만 유로 지출

EU집행위원회, EU역내외 농산물진흥에 2억 3천만 유로 거출

❍ EU집행위원회는 4월 29일, EU가 EU역내외 농산물진흥을 위하여 2억 3,000만 유로를 지출한다고 발표함.

- 4월 1일에 유럽각료이사회 및 유럽이사회가 EU의 농산물진흥정책을 잠정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가맹국에서 신청한 20여개의 프로그램이 승인됨.
- 이것에 해당하는 예산으로서 2014년부터 3년간 4억 650만유로의 약 50% 정도 되는 부분을 EU가 부담하는 것임.

❍ EU는 이전부터 농산물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마련하고 있었음. 이후 시장 확대를 위하여 농산물진흥정책 강화를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대하여 2013년 11월 EU집행위원회로부터 법안이 제출되어 검토가 이루어짐.

- 한편, 금번 예산은 전기(2011년부터 3년간)의 예산액 6,100만 유로보다 대폭 증가한 것임.

❍ EU집행위원회는 농산물진흥정책에 대하여 EU의 농산물은 품질 및 다양성이 뛰어나지만, 단지 품질이 뛰어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하여 농산물진흥 프로그램을 통해 각국의 소비자에게 EU의 기준, 품질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으로 시장 확대, 경쟁력 강화로 연결된다고 함.

❍ EU집행위원회 농업농촌개발 담당위원은 4월 1일 잠정적 합의는 EU에 있어 잠재적인 경제성장을 초래하는 농업부문을 진흥하는 것이며, EU의 농업생산자 및 납세자에게 희소식으로 모든 국가에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프로그램 개요

❍ 승인된 20여개의 프로그램은 12여개의 EU역내시장을 대상으로 8여개 EU역외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실시 기간은 2014년에서 3년간임.

- 주요 내용은 EU역내외에 EU 농산물의 정보 제공 등을 조성하는 것이며 지원

대상은 생산자 단체임.

❍ 특히 금번에 주목되는 점은 농산물의 안전성 및 동물복지 배려 등과 함께 원산지 명칭보호(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PDO),[6] 지리적 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PGI),[7] 전통적 특산물보호(Traditional Specialities Guaranteed, TSG)[8]의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임.

❑ 향후 동향

❍ EU는 2010년에 「유럽 2020」로 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세계 소비 수요의 90%는 EU역외시장에 있음. 향후 EU 발전에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수요소이며, 적극적인 통상 교섭을 하고 있음.

❍ 최근 EU의 주된 무역 교섭으로는 2011년 7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 2013년 3월 태국과 FTA교섭 시작, 2013년 10월 캐나다와 포괄적경제무역협정(CFTA) 교섭에 기본합의, 2013년 11월 중국과 투자 협정을 위한 교섭 시작, 2013년 7월 미국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교섭을 시작하는 등 시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음.

※ 자료: EUROPA(2014.04.29), 日本農畜産業振興機構(2014.05.01)

6) 원산지명칭보호(PDO): 특정한 지역에서 인정된 방법에 의해 생산, 처리, 조리된 식품.
7) 지리적 표시보호(PGI):생산, 처리, 조리 중 적어도 1단계에서 특정한 토지와 결부되어 있는 식품.
8) 전통적 특산물보호(TSG):지리적 원산지에 관계없이, 조성이나 생산 방법이 전통적인 성질을 중시한 식품. 여전히 동 정책의 최종 합의는 올해 9월 유럽의회 및 유럽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있을 예정임.

FAO,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증가 발표

❑ 온실가스 삭감을 위한 충분한 대응책 강구 필요

❍ FAO의 새로운 온실가스 추정치에 의하면, 농림수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거 50년 사이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음. 확실한 삭감정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30% 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함.

❍ FAO가 독자적으로 농업·임업 및 기타의 토지이용(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AFOLU)에서 기인한 세계의 온실가스(Green House Gas, GHG)배출량의 추정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본 보고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이 발표한 제5차 평가 보고서에 기여하였음.

❍ 곡물이나 가축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농업부문의 온실 가스는 2001년 47억 톤(CO_2 환산[9])에서 2011년에는 53억 톤으로 14% 증가함. 증가량은 주로 농업총생산이 확대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였음.

❍ 한편 토지이용 전환 및 삼림벌채로 순온실가스 배출량은 같은 10년간 거의 10% 감소하였고, CO_2 연 환산율로 약 30억 톤에 달함. 이것은 삼림벌채량이 감소한 것과 많은 국가에서 대기 중 탄소격리량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임.

❍ 농업·삼림·기타의 토지이용(AFOLU)에 의한 2001~2010년 동안의 평균 배출량을 이하와 같이 분류함.

- 작물이나 가축의 생산에서 발생되는 CO_2 환산 연간 50억 톤
- 삼림으로부터 다른 토지이용에의 순전환(삼림벌채의 대용치로서)에 의해 CO_2 환산 연간 40억 톤
- 열화(degradation)된 이탄지(peatland)[10]에서 CO_2 환산 연간 10억 톤
- 바이오매스 연소에 의해 연간 CO_2 환산 2억 톤

9) CO_2 환산(또는 CO_2 eq)은 지구온난화계수에 기초를 두어 다른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측정 기준임.
10) 이탄지(泥炭地, peatland):이탄이 집적되어 있는 토양으로 습지, 늪 등에 수생 식물·선태류 및 그 밖의 것이 다소 부식화되어 쌓인 것으로서 원식물의 조직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음. 모체에 따라 침적 이탄, 섬유질 이탄, 목질 이탄으로 구분됨.

- 상기의 배출량의 이외에 10년간 탄소흡수원인 삼림이 대기로 흡수한 탄소격리량은 CO_2 환산 연간 약 20억 톤이었음.

❍ 각국에서의 보고와 FAO의 데이터에 의하면, 동 배출량은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지만 타 부문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한 결과로서 배출되는 양의 증가 속도와 동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인위적 기원의 총배출량에 대하여 AFOLU가 차지하는 비율이 실제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

❑ 농업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 농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는 것은 장내 발효 즉 가축이 먹이를 소화시킬 때 생성되어 트림을 통해 나오는 메탄가스에 기인하고 있음.

- 이것은 농업부문에 2011년에서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 39%를 차지하였음. 2001~2011년 동안 장내 발효 배출량은 11% 증가하였음.

❍ 합성 비료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배출량은 2011년 농업 온실가스의 14%(CO_2 환산 7.25억 톤)를 차지함. 이것은 2001년 이후부터 37%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이 가장 많은 증가세를 나타낸 배출 요인임.

❍ 논에서의 생물학적 프로세스의 결과로 발생하는 온실 가스는 농업부문 총 방출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사바나 초원을 완전히 연소시켜도 농업부문 총 방출량의 5%에 불과함.

❍ FAO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농업관련 온실 가스 배출량의 45%를 차지한 지역은 아시아, 계속하여 미국(25%), 아프리카(15%), 유럽(11%), 오세아니아(4%) 순이었음.

- 그러나 1990년에는 아시아의 총배출량은 38%로 현재의 수치보다도 낮았으며 유럽은 21%로 훨씬 컸음.

에너지 사용에 따른 수치

- 금번 FAO가 공개한 새로운 데이터는 전기 및 농업기계, 관개 펌프, 어선을 구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석 연료를 포함, 전통적인 연료원에서 생성되는 농업부문에서의 에너지 사용 배출량의 상세내용도 제공하고 있음.

- 동 배출량은 1990년 이래 75%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CO_2 환산 78,500만 톤을 초과하였음.

올릉안 데이터로 적정안 대응 강구

-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배출량 데이터와 완화책 두 방면에서 상세한 평가가 필요함.
  - 예를 들면, FAO는 이미 각 공급망에 따른 단계별의 평가를 작성하고 있으며, 축산부문의 포괄적인 완화 개입 유효성을 분석하고 있음.

- FAO 기후·에너지·토지소유부 관계자는 FAO가 새로운 데이터는 농업이 얼마나 지구 온난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만들어진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정보 소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금까지 정보의 격차가 과학자나 정책 입안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책에 대하여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동시에서 큰 저해요인이 되었으며, 농업부문 배출량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해 왔음.

- AFOLU활동의 배출량에 관한 데이터에 따라 가맹국은 각 완화책에서 옵션의 특정이 용이해지고 농민이 보다 신속하게 기후변화에 적합한 대응책을 취할 수 있게 함.
  - 또한 전체적인 문제점과 식량안전보장을 개선함. 각국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농촌개발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동 과제에서의 능력개발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으며 동 요구에 대하여 전 세계의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대응한다고 언급함.

IPCC보고서의 공언과 FAO의 활동

- 2012년에 개설한 배출량에 관한 FAO STAT는 처음으로 현재 수집된 IPCC의 제5차 평가 보고서에 대하여 농업·임업 및 기타 토지이용 활동 온실 가스 배출량 해석에

있어서의 중요한 정보원임.

- 금일 발표된 것과 같은 데이터의 갱신 및 확장은 매년 이루어짐.

❍ FAO STAT 배출량 데이터베이스는 독일 및 노르웨이 정부에서의 자금 제공에 의해 개발되었음.

※ 자료: FAO(2014.04.14)

자료 작성 : 이혜은 연구원, 윤성은 연구원, 서강철 연구원